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제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4. 11. 23)

1. 심사 경과

가. 2004. 11. 15 : 사천시장 제출

나. 2004. 11. 15 : 총무위원회 회부(의안번호 제 55호)

다. 2004. 11. 23 : 제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 설명 요지(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가. 제안 이유

어린이집 입소순위와 종사자 휴가일수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1) 입소순위 추가

-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자녀, 입양아동, 세번째 자녀
- 모·부자복지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 가정의 자녀

2) 정년 조정

- 시설장 : 61세 ⇒ 60세, 종사자 : 58세 ⇒ 57세

3) 종사자 휴가 일수 조정

- 출산휴가 : 60일 ⇒ 90일
- 배우자 출산휴가 : 2일 ⇒ 3일

4) 부처명칭 변경

- 보건복지부장관 ⇒ 여성부장관

5) 어린이집 통·폐합 및 민간어린이집 전환

- 한내어린이집, 삼천포어린이집 ⇒ 2002. 1. 1 삼천포어린이집으로 통·폐합
- 동금어린이집 ⇒ 2002. 1. 1 민간어린이집으로 전환

다 관계 법령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지방공무원법

3.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김태주)

-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입소 순위와 시설장등의 정년 및 종사자 휴가일수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 개정되는 내용 중
 - 제6조제1항제1호의“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로 하는 것은 관련된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 것이고, 입소순위 중 제2·4·5·7호를 신설하여 세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2004년도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정한 것이며
 - “보건복지부(장관)”을 “여성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은 본 업무가 2004. 7. 12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 제10조의 수탁자의 의무 중 제6항을 삭제하는 것은 의료급여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수탁자의 의무가 명시되어있어 삭제하는 것이며
 - 제13조의2의 정년조항을 시설장은 61세에서 60세로 하고 종사자는 58세에서 57세로 조정하는 것과 제15조의 종사자 출산휴가 일수를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하고 배우자휴가를 “2일”에서 “3일”로 조정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년과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규정된 연가일수를 근거로 하여 개정하는 것임.
 - 제14조의 시설종사자에 대한 시장의 전보권한을 삭제하는 것은 2001. 3. 13 보육시설의 종사자 임면은 보육시설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지침에 의한 것이며.
 - 그리고 별표1의 내용 중 한내어린이집과 동금어린이집을 삭제하는 것은 이 시설이 통폐합 또는 민간어린이집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임.

-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관련된 상위법과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 없음.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위원	질 의 내 용	답변자	답 변 내 용
이문상 위 원	○어린이집 5곳에 입소한 어린이가 전부 결손 어린이만 보육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인의 자녀도 입소가능한지, 그리고 공립시설을 민간인에게 이관한 이유는?	사회복지 과 장 임 귀 자	○입소대상자는 정원 범위내에서 일반인 자녀도 입소 가능하나 어려운 가정 자녀를 우선으로 입소 하고 있음. 그리고 민간인에게 전환한 것은 동금어린이집인데 이 시설은 부지가 철도청 부지이고 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민간어린이집으로 전환하였음
김석관 위 원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였는지?	사회복지 과 장 임 귀 자	○공무원 정년을 기준으로 정하였음.

5. 토론 요지 : 원안 가결 의견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 : 없 음